

중국, '새로운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 시행

중국 정부는 2월과 3월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부여 및 품목별 외국인 투자 허가 기준이 되는 '외국인투자 지도 방향 규정'과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을 새로이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것임을 발표함.

- 금번 새로 발표된 '외국인 투자 지도 방향 규정'과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은 1995년 제정된 이래, 1997년 한차례 수정되었으며, 이번에 WTO 가입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 업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목록을 조정함.
-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 분야를 종전대로 '장려', '허용', '제한', '금지'로 분류하되 품목을 대폭 조정
 - '장려' 분야를 확대하고, '제한' 분야를 축소하였음. 구체적으로 '장려' 분야가 종전의 186개 목록에서 262개 목록으로 증가하고, '제한' 분야는 종전의 112개에서 75개 목록으로 축소되었으며, '제한' 분야를 다시 甲과 乙로 세분하지 않음
 - '제한' 분야의 축소는 항구 공용 부두의 중국측 경영권 장악과 같은 외국인 투자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하거나, 통신·가스·난방·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허용 등에 따른 것임
 - '장려', '제한', '금지' 분야는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다만, ‘허용’ 분야는 상기 세 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분야로 목록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WTO 가입에 따라 이번 ‘목록’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특징이 있음

- WTO 가입 일정에 따라 은행, 보험, 무역, 관광, 통신, 수송, 회계, 법률 등 서비스 부문의 지역, 수량, 경영범위, 지분비율에 대한 개방 일정을 목록에 명시

-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서부지역 진출 업종과 지분비율 제한을 완화

<단독투자 허용>

- 동, 아연, 납, 알루미늄 등 비금속 광물 탐사 및 채굴
- 저 품위로 선광이 어려운 제련 등

<업종 완화>

- 일산 500톤 이상의 유리 생산
- 일산 2,000톤 이상의 시멘트 생산 등

- 또한, ‘목록’에서 명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허용’ 분야로 간주하여 제품 경쟁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

외국인 투자 산업 목록의 분야별 주요 내용

<장려 분야>

- 농업 관련 신기술 및 종합개발 분야
- 에너지·교통·중요 원자재 관련 분야
- 첨단기술 및 응용기술, 제품 성능 개선 및 기업 효율 제고, 국내 공급부족인 신규 설비 및 신소재 생산 관련분야
- 시장수요에 맞춰 품질 제고, 신시장 개척이나 국제 경쟁력 제고 분야
- 신기술, 최신 설비를 통해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하거나 재활용을 포함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오염 방지 관련 분야
- 중·서부지역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분야
- ‘허용’ 분야이나 생산제품을 100% 직접 수출하는 사업

<제한분야>

-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
- 자원 절약과 생태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분야
- 국가가 보호하는 희귀 광물의 탐사 및 개발분야
-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산업분야
 - * 제한 분야에 해당되나 생산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省政府 또는 국무원의 인가를 얻어 ‘허용’ 분야로 분류

<금지분야>

- 국가 안전과 사회공익에 반하는 분야
- 환경오염, 생태환경 파괴 및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분야
- 대규모 경작지를 점유함으로써 토지의 보존과 개발에 부정적인 분야
- 군사시설의 안전과 이용을 저해하는 분야
- 중국 전통 공예기법 등을 이용하는 분야

○ ‘장려’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 등 우대혜택 부여

- 외국인 투자자가 장려분야에 투자할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혜택을 향유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인 에너지·교통·도시기반시설(석탄·석유·천연가스·전기·철도·도로·공항·항구·하수처리·쓰레기처리 등) 건설 및 경영을 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인가를 얻어 관련분야의 경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장려’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 범위내에서 수입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허용’과 ‘제한’ 분야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서부지역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조건을 완화하고, ‘중·서부지역 비교우위 산업목록’에 포함된 경우는 장려 사업으로 분류하여 우대혜택을 부여

□ 신규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방향’과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공포 의미

○ 적극적인 대외개방 의지 표명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 지도 방향 규정’과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을 새로이 제정하여 2002년 4월부터 시행함은 지난해 11월 중국이 WTO 가입함에 따라 WTO 가입 의정서에 의거, 대외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임

○ 경쟁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도모

- ‘허용’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대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진출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내·외자간의 경쟁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음

- 국가 기간산업의 중국측이 지속적인 경영권 장악
 - 국민경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석유·천연가스, 자동차, 통신,
항공기, 발전설비, 철도 등은 중국측이 경영권 장악하도록 함
으로써 경제적 주권 유지 도모

문의 : 국별조사실 부부장 김주영 ☎ 3779-6647, jykim@koreaexim.go.kr
: 차 장 전선준 ☎ 3779-6650, jsjun@koreaexim.go.kr
: 대 리 이지연 ☎ 3779-6655, jeyi@koreaexim.go.kr